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영희,
김용석, 서윤기, 신정호,
양민규, 이상훈, 이준형,
이호대, 임종국, 장인홍,
채유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수의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. 이는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한도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른 반영사항임.
- 2012년부터 추진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4조)
- 나.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9조의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4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9조의4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 ①</u>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②</u>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
문서번호

20220117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경우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17

회신일 : 2022.01.21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을 “15명” 에서 “20” 명으로 변경하고 제19조의4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에서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,373,000천원(연평균 274,600천원)

○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유사 사업을 참조하여 지원 간호사는 150명으로 가정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1,373,000천원(연평균 26,4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 계
세입	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의원 수 증가 (안 제4조의1)	4,600	4,600	4,600	4,600	4,600	23,000
	간호사 지원 비용 (안 제19조의4)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1,350,000
	소계(b)	274,600	274,600	274,600	274,600	274,600	1,373,000
□총 비용(b-a)		274,600	274,600	274,600	274,600	274,600	1,373,000

○ 위원 수 증가 비용 ≙ 23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위원회 운영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3~2027년)

- 연간 위원회 운영 비용

$$\begin{aligned} &= (\text{참석수당} \times \text{수당지급 참석인원} \times \text{개최건수}) + (\text{업무추진경비} \times \text{참석인원} \times \text{개최건수}) \\ &= (200,000\text{원} \times 5\text{명} \times 4\text{회}) + (30,000\text{원} \times 5\text{명} \times 4\text{회}) \\ &= 4,600\text{천원} \end{aligned}$$

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,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○ 간호사 지원 비용 ≍ 1,350,000천원

$$= 270,000\text{천원} \times 5\text{년}$$

$$= 1,350,000\text{천원}$$

- 연간 간호사 지원 비용

$$= 150,000\text{원} \times 150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$$

$$= 270,000\text{천원}$$

※ 시민건강국 기추진 사업 통합방문건강 수당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